

의안번호	2214345
의 퇴 인	이인영의원
회 답 일	2025.11.19.
추 계 번 호	25D623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2조의2 (채무조정법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특례)	채무조정법인으로부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제3항),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채무조정법인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함(제6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2조의2 (채무조정법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¹⁾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수행하는 법인

1) 제32조의2(채무조정법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채무조정법인”라 한다)은 채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신용정보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7.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채무조정법인”이라 함)이 채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32조의2제3항²⁾ 및 제6항³⁾은 채무조정법인으로부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채무조정법인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함
-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국세 및 지방세 자료,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의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감소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법인의 자료별 요청 건수와 자료별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 그러나 채무조정법인의 자료별 요청 건수를 추정할 정보가 없어, 개정안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감소분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참고로, 정부24(<https://plus.gov.kr/>)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부동산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본의 발급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음

② 채무조정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2) 제32조의2(채무조정을 위한 정보처리) ③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법인의 요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3) 제32조의2(채무조정을 위한 정보처리) ⑥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채무조정법인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표 1] 각종 민원서류발급 수수료 현황: 2025.8. 기준

(단위: 원)					
구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금액	1,000	400	1,000	500	500

자료: 정부24(<https://plus.gov.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